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 근거 마련 >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1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 근거 마련	2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01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5. 19.

(3) 회 부 일 : 2026. 5.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돌봄활동에 참여한 봉사자의 활동 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향후 돌봄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립·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가칭 ‘시니어케어타임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노인돌봄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을 보완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돌봄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봉사시간 실적의 적립·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본인의 실적
적립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봉사시간 실
적을 적립한 자 또는 그로부터
봉사시간 실적을 양도받은 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노인복지시
설 등에 해당 봉사시간 실적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
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 노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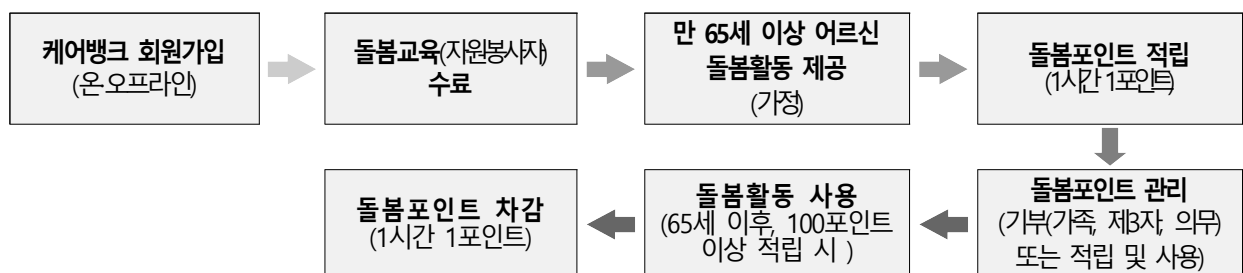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업무 중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
복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u>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⑥ 제1항에 따른 돌봄 활동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양도의 요건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제공한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이를 본인·가족 및 제3자가 향후 돌봄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음.

< 케어뱅크 사업 추진 체계 >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구축된 케어뱅크 정보시스템은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역 및 시간, 돌봄 대상자 연계 현황 등을 관리하고, 봉사 활동 실적에 따른 돌봄포인트의 적립·기부·사용 등의 기능을 수행

하는 시스템으로, 2025년 기준 전국 55개 수행기관이 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누적 약 5만 5천여 명의 봉사활동 실적과 약 171만 시간의 봉사시간을 관리하고 있음.

< 케어뱅크 사업 관련 주요 통계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활동 돌봄봉사자(명)	5,359	5,749	4,545	4,758	5,022
돌봄대상자(명)	8,648	10,025	10,051	10,578	11,306
돌봄포인트(포인트)	161,322	169,118	162,043	167,091	182,157
(누적 돌봄포인트)	(1,027,714)	(1,199,462)	(1,361,505)	(1,528,596)	(1,710,753)
수행기관 수(개소)	50	55	55	55	55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케어뱅크 사업이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 참여자의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향후 돌봄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자원봉사 활동을 시간 단위로 축적하고 이를 향후 돌봄서비스 이용과 연계하는 방식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적 돌봄체계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 내 돌봄 수요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특히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간 상호돌봄과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돌봄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의 운영 방식과 돌봄포인트의 성격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케어뱅크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노인 돌봄 봉사시간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를 사용하여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이나, 개정안에서는 돌봄포인트를 통해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봉사시간 실적에 상응하는 돌봄서비스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돌봄포인트를 통해 제공되는 돌봄서비스가 자원봉사를 통한 돌봄의 형태인지, 아니면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제공받는 유급 돌봄서비스인지에 따라 제도의 성격과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개정안은 돌봄포인트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돌봄포인트를 활용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해당 포인트가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가진 교환수단으로 기능하여 거래되거나 재화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축적한 시간과 노력을 상호 돌봄으로 환원한다는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봉사활동이 경제적 보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돌봄포인트의 법적 성격, 사용 범위,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하위 법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 제9조의2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 등

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운영경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재정지원의 범위를 제1항에 따른 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케어뱅크 사업 관련 예산은 55개소 수행기관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각 2,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정보시스템 등 플랫폼 유지 관리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4,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특히 돌봄포인트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유급 돌봄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의 범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자발적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 돌봄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기존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서비스 제공 주체의 법적 명확성 확보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안 제9조의2 제3항 중 ‘노인복지시설 등’을 현장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 운영기관’으로 변경하여 사업 취지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 정비, 현장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돌봄 공백 보완, 현재 운영 중인 케어뱅크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지속가능한 사회 연대 강화 측면에서 찬성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적립·활용제도를 현재 일부 시·군·구(55개소)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단계별로 ‘중앙 → 시·도 → 시·군·구’의 전국적 조직화가 필요하므로 수용함.

문 의 처
02)6788-5497